

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	통보국가: 칠레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 항):
2.	담당기관: 보건부(MINSAL)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: 국제경제관계차관실 – 칠레 외교부(SUBREI)
3.	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4.	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번호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화장품
5.	제목 (페이지수, 언어): 화장품 국가관리시스템 규정을 승인한 2010 년 보건부 최고령 제 239 호 개정안 (33 페이지, 스페인어)
6.	내용: 화장품 국가관리시스템 규정을 승인한 2010 년 보건부 최고령 제 239 호 개정안에 해당한다.
7.	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적과 근거: 순환경제, 시장 감시 및 화장품 감시 정책 준수; 소비자 정보 제공, 라벨링;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
8.	관련 문서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장품 국가관리시스템 규정을 승인한 2010 년 보건부 최고령 제 239 호
9.	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추후 결정
10.	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 일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국제경제관계차관실

외교부

주소: Teatinos 180, piso 11

전화: (+56)- 2- 2827 5250

이메일: tbt_chile@subrei.gob.cl

<https://www.minsal.cl/wp-content/uploads/2021/11/0-Propuesta-Modificacio%CC%81n-del-DS-No239-Consulta-Publica.pdf>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3/TBT/CHL/23_14783_00_s.pdf